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5. 2. 21.>

확 인 서

1.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성명
	(현재) (혐의 당시)	(현재) (혐의 당시)	

2. 비위 유형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성폭력 범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성매매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성희롱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 제외)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소극행정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성 관련 비위 또는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부정청탁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
3. 징계부가금	대상 여부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, 대상금액(원, 배)	
	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	

4.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	공적 사항			징계 사항[불문(경고) 포함]		
	포상일	포상 종류	시행청	날짜	종류	발령청
	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	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
5. 혐의자의 평소 행실	주의·경고 횟수,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6. 그 밖의 사항	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(□ 해당함 □ 해당 없음) ※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제5항에 따라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」 제161조의2의 적극행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, '해당함'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.
	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

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 (직급) (성명) (서명 또는 인)

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(직위) 직인